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84호 2018. 11. 01.(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19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 사항고시 --- 2
- 사천시 고시 제197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고시 ----- 3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519호 사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 ----- 8
- 사천시 조례 제1520호 사천시 명예 읍·면·동장조례 폐지 조례 ----- 9
- 사천시 조례 제1521호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0
- 사천시 조례 제1522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 사천시 조례 제1523호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16
- 사천시 조례 제1524호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 23
- 사천시 조례 제1525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 24
- 사천시 조례 제1526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361호 사천시 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38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사천시 고시 제 2018-19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 10. 25.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18-2호 (2018. 6. 29.)
2.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건설수도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공사 내용
 - 마도항 부잔교 이설 및 수리공사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경남 사천시 마도동 79-2번지선 공유수면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2018. 10. 22.

사 천 시 공 보

제584호

사천시 고시 제2018 - 197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천시 동서동 각산골 일원 「동서동 각산골(용운사) 주변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제1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사 천 시 장

1. 인가내용

시 설 의 명 칭	동서동 각산골(용운사) 주변 하수도 설치사업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시행자	주 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성 명	사천시장(하수도사업소장)
사 업 목 적	주거환경 개선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함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남 사천시 동서동, 선구동 각산골 일원 ○ 면적 : 3.75ha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 종류 : 「하수도법」 제2조8호의 분류식하수관거 ○ 명칭 : 동서동 각산골(용운사) 주변 하수도 설치사업 ○ 용량 : 하수관 D200 L=405.4m, 배수설비 11개소	
예정 하수처리구역	삼천포처리구역	
사 업 시 행 기 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사 천 시 공 보

제584호

2.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연번	위 치				지목	면 적(m ²)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비고
	시	읍면동	리	지번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1	사천	동동		459-1	중	1423	2.4	도	유응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385-39	
2	사천	동동		459-3	중	35	0.5	도	사천시		
3	사천	동동		454-2	묘	250	4.4	도	사천시		
4	사천	동동		455-2	대	106	4.3	도	사천시		
5	사천	선구동		335	구	3628	6.1	도	국(기획재정부)		
6	사천	동동		446-1	묘	81	2.4	도	강복연 외 28인	사천시 죽전안길 47	
7	사천	동동		445-2	전	49	3.3	도	사천시		
8	사천	동동		444-3	답	113	1.2	도	하진효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385-32	
9	사천	동동		444-2	답	77	3.4	도	사천시		
10	사천	동동		443-1	도	66	3.2	도	사천시		
11	사천	동동		443-2	답	182	6.0	도	사천시		
12	사천	동동		441-2	전	88	2.8	도	사천시		
13	사천	동동		441-1	도	300	0.8	도	사천시		
14	사천	동동		440-3	도	116	12.7	도	사천시		
15	사천	동동		440-1	도	273	2.0	도	사천시		
16	사천	동동		436-1	도	261	4.3	도	사천시		
17	사천	동동		434-1	도	220	7.4	도	사천시		
18	사천	동동		384-1	도	175	5.6	도	사천시		
19	사천	동동		383-1	도	6981	8.4	도	사천시		
합 계						14,424	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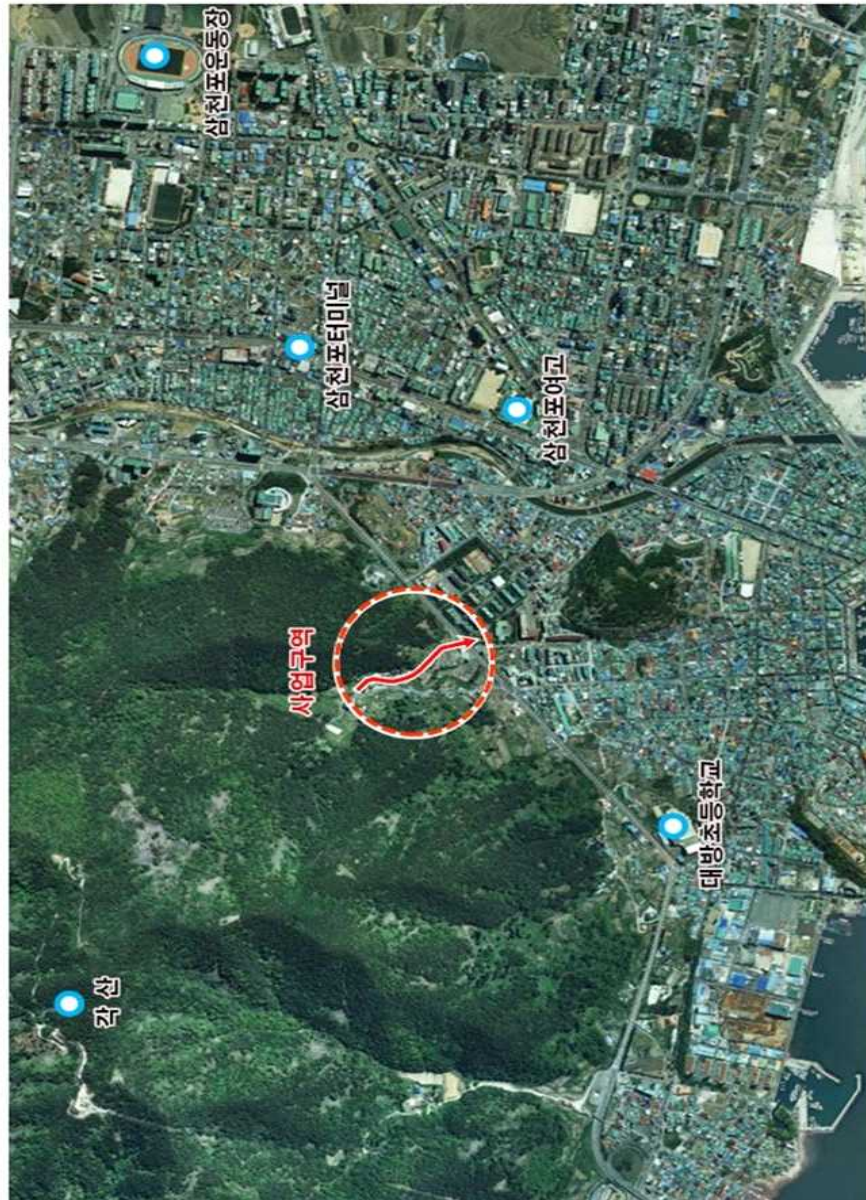
사 천 시 공 보

제584호

3.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하수도사업소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055-831-55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권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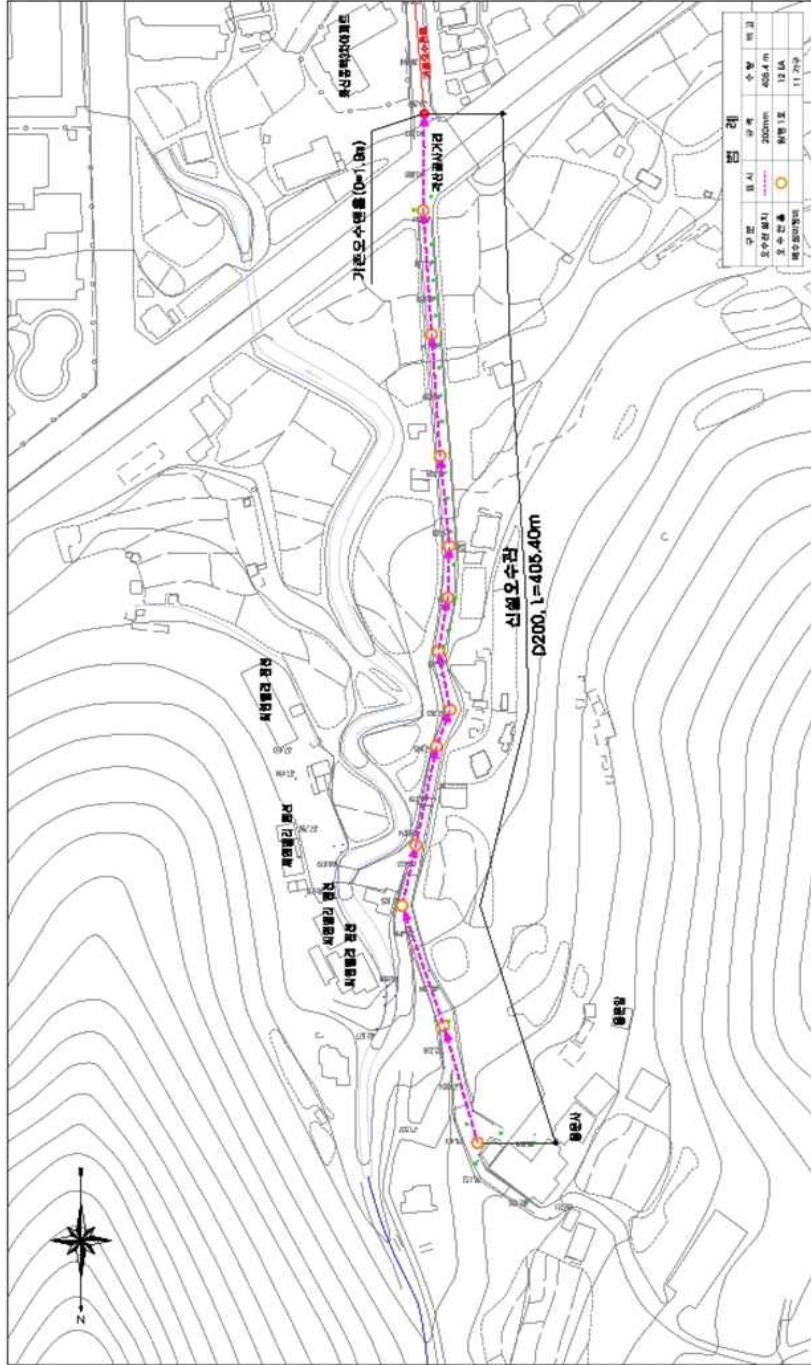
위 치 도



사 천 시 공 보

계 획 평 면 도

S=NONE



사 천 시 공 보

제 584 호

사천시 조례 제151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

사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584 호

사천시 조례 제152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명예 읍·면·동장조례 폐지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명예 읍·면·동장조례 폐지조례

사천시 명예 읍·면·동장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584 호

사천시 조례 제152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의 영유아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584 호

사천시 조례 제152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별표와” 를 “별표1과” 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사 천 시 공 보

제584호

제7조제2항제1호 중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사용허가 신청 시 증명서류를 함께”를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는 별표2와 같다.

제11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제21조2”를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1로 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84호

[별표1]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6조제2항 관련)

1. 공설묘지

가. 사용료

기준	사용료(원)	비고
3.3제곱미터당	30,000	

나. 수수료

종별	단위	수수료(원)	비고
묘지관리	1기	23,000	

2. 화장시설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관내	관외	
성인(15세 이상)	1구	70,000	400,000	
소인(15세 미만)	1구	50,000	300,000	
개장 유골	1구	40,000	150,000	
태아	1구	35,000	120,000	
그 밖의 적출물	Kg	1,000	3,000	

사 천 시 공 보

제 584 호

3. 봉안당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관내	관외	
봉안기간 15년	1기	200,000	1,000,000	
	2기(부부 등)	400,000	2,000,000	
봉안기간 10년	1기	140,000	사용불가	무연고

4. 자연장지

구분	기준	면적(m ²)	사용료(원)	비고
개인용	1구	0.25	300,000	- 사용료 : 30년 기준 - 기간연장(15년 단위)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족(2구)	1개소	0.50	600,000	
가족(4구)	1개소	1.00	1,200,000	
가족(6구)	1개소	1.50	1,800,000	

사 천 시 공 보

제584호

[별표2]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제7조제4항 관련)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사 천 시 공 보

제584호

사천시 조례 제152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소요된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84호

제3조(지원대상)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중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를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제4조(지원금액)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은 매년 정부가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② 시장은 서비스기간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단축형 : 단축형 본인부담금
2. 표준형 및 연장형 : 표준형 본인부담금

제5조(지원신청 등) 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이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3.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원대상 확인)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 및 사천시 거주기간

사 천 시 공 보

제584호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 대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시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가 정하는 서비스제공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비스제공 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종료 전 타 시·군·구로 진출하였을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을 중단한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대상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대장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사 천 시 공 보

제584호

작성하여 비치·관리하고,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환수사유 및 환수일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584 호

[별지 제1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산모의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출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주 소				
서비스 이 용	서 비 스 이용기간	~ (일)		서 비 스 제공기관	
	소득유형			서비스 기 간	<input type="checkbox"/> 단축 <input type="checkbox"/> 표준 <input type="checkbox"/> 연장
	본인부담 금 납부액	₩			(금 원)
본인부담금 청구금액		₩			(금 원)
지급 계좌번호		<input type="checkbox"/> 은행명 :	<input type="checkbox"/> 계좌번호 :	<input type="checkbox"/> 예금주 :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 의 자	(서명)
유의 사항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 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2. 서비스 기간이 연장형인 경우 표준형 서비스 금액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산모와의 관계			
 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3. 산모 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 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공 보

제 584 호

사천시 조례 제152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를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584 호

사천시 조례 제152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목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을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안에서의 건축제한)”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 을 “영 제76조제2호” 로,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항만보호시설지구” 를 “영 제31조제2항제5호나목의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으로 한다.

제72조 중 “지방세 징수의 예에” 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584 호

사천시 조례 제152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1항의 단서 중 “다른 회사 광고” 를 각각 “타사광고” 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84호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10조제2항 중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고 한다)제5조의2” 을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 을 “별표7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로 한다.

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10일 ” 을 “15일” 로 한다.

제22조제7항 중 “제출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감면 또는 ” 을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 「향토예비군설치법」 ” 을 “ 「예비군법」 ” 으로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 및 별지 제1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시 기간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게시된 현수막의 게시기간은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수료
<p>가. 벽면 이용 간판</p> <p>1) 자사광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6제곱미터 이하 3,000원 - 면적 6제곱미터 초과 시 1㎡ 더 하는 금액 1,000원 <p>2) 타사광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6제곱미터 이하 30,000원 - 면적 6제곱미터 초과 시 1㎡ 더 하는 금액 2,000원 	
<p>나. 삭제</p>	
<p>다. 돌출간판 15,00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6제곱미터 이하 1,000원 - 연면적 6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 이·미용업소 표지 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 등(개당) 	
<p>라. 공연간판</p>	<p>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p>
<p>마. 옥상간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35,000원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15,000원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
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사. 애드벌룬

- 1)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5,000원
- 2)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 간판에 따름
- 3)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따름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제곱미터 이하 3,000원
- 연면적 1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
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
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9,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제곱미터 초
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10,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음식판매자동차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4,000원

파. 입간판 3,000원

<p>하. 현수막</p> <p>1) 현수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제곱미터 이하 3,000원 -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 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p>2) 현수막 게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제곱미터 이하 7,000원 -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 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p>거. 벽보(1건)</p>	3,000원
<p>너. 전단(1건)</p>	3,000원
<p>더.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p>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제곱미터 이하	14,000원
	- 연면적 6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	20,000원
	- 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하	14,000원
	- 연면적 3.5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21,000원
	- 연면적 50제곱미터 초과 70제곱미터 이하	38,000원
	- 연면적 7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14,000원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	20,000원
	- 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따름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따름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따름	
※ 도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이하	11,000원
	- 연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600원
아. 그 밖의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따름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p>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제곱미터 이하 -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 0.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p>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p>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p>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p> <p>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제곱미터 이하 -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 0.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p>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p>법 제20조제1항제1호</p>	<p>13만원</p> <p>22만원</p> <p>32만원</p> <p>42만원</p> <p>50만원</p> <p>64만원</p> <p>75만원</p> <p>100만원</p> <p>129만원</p> <p>130만원+연면적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8만원</p> <p>12만원</p> <p>14만원</p> <p>25만원</p> <p>33만원</p> <p>49만원</p>

-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
- 2.1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8만원

12만원

14만원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제곱미터 이상 3.7제곱미터 이하
- 3.8제곱미터 이상 4.4제곱미터 이하
- 4.5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22만원

25만원

32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6.1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이하
- 8.1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42만원

58만원

75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0만원+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가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 21장 이상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라. 1년 이상		400만원
3. 삭제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 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본 교육 및 보충교육 불참 시 각 1회 불참으로 본다.
-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 원 미만은 버린다.

사 천 시 공 보

제 584 호

[별표7]

불법광고물 현수막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제10조제4항 관련)

구 분		보 상 금
종 류	규 격	
현수막	면적 5㎡ 이상	1,000원 / 장
	면적 5㎡ 미만	500원 / 장
벽 보	30cm×40cm 초과	50원 / 장
	30cm×40cm 미만	40원 / 장
전 단	일 반 형	20원 / 장
	명 함 형	10원 / 장

※ 보상금 지급 한도액 : 50,000원(1인/1주/1회에 한함)

2. 보상금 신청요건

1) 대상지역 : 사천시 전 지역

2)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사천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3) 보상대상 유동광고물(시장의 정비계획에 따라 수거된 광고물에 한함)

수거보상대상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 관내(전주·가로수·가로등주, 건물벽면, 도로펜스, 교각 등)에 걸린 불법 현수막 . 도로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건물벽면 포함) .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지정게시대·게시판 부착 광고물 .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 . 행정용·선거용·기타 협의된 광고물 .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 아파트 등 개인건물 현관 내부 부착광고물 . 신문지 전단지 . 옥외 살포되지 않은 홍보·명함식 전단지 . 타 시·군 지역 배포 광고물

주) 광고물 수거로 발생하는 사고 및 광고주와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광고물 수거 및 신청인에게 있음.

사 천 시 공 보

제584호

사천시 훈령 제361호

사천시 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11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84호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

소송별 구분	내 용	지 급 기 준	
		착 수 금	승소사례금
민사소송 행정소송	1.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변론이 있는 경우	300,000원 이내 1,000,000원 이내	없음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 기준)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500,000원 이내 3,000,000원 이내 3,500,000원 이내 4,000,000원 이내 5,000,000원 이내 500만원+(소송물가액-5억원) ×0.5÷100 = 환산금액 이내	승소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3. 중요사건(소송 승패에 따라 행·재 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10,000,000원 이내	
	4. 상고심 및 환송심 ○ 본안심리	1심 본안사건에 준함 (단, 동일 변호사 선임 시 본안사건의 1/2 이내)	
기타 소송 비용	1. 인지대: 실액 2. 송달료: 실액 3. 검증비: 실액 4. 감정료: 실액 5. 출장여비: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중 4급 공무원 해당액 6. 복사료등: 기타비용.실액		